#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25

발의연월일: 2020. 7. 23.

발 의 자:이원택·김주영·김병욱

이상직・신정훈・이수진비

윤재갑 • 주철현 • 민형배

윤미향・양향자・문진석

진성준 • 이수진 • 이원욱

천준호 • 한기호 • 김원이

양정숙 · 김남국 · 안규백

이용빈 · 양기대 · 임호선

이규민 • 박성준 • 장경태

전용기 · 김경만 의원

(29인)

## 제안이유

우리 농산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속에서 생산가능 인구는 더욱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른 인구절벽 쇼크와 지방소멸 위기는 가속화 되고 있음.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지역은 93곳에 달했으며, 올 해에는 105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소멸 위기지역은 오히려 증가

하고 있고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자립가능성을 제고하 며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기반을 개선함으로써 지 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정주여건과 생활기반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역경제 침체 및 지방소멸 위기가 있는 지역을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함(안 제6조).
-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5년마다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 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보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 마.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이주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제14조).

-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멸위기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을 설치·유 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
- 사. 소멸위기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사증 발급 과 체류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21조).
- 아. 시·도지사는 소멸위기지역에서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자. 교육행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소멸위기 지역의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가 연계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협업 및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 록 함(안 제27조).
-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영유아 보육지원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국공립 어린이 집을 우선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28조).
- 카.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함(안 제30조).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정주여건과 생활기반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이란 인구감소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고, 해당 지역의 면적 대비 인구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아 지역의 발전 및 낙후도가 심한 곳으로 행정안전 부장관이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특별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방소멸위기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이주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방소멸위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에서 지 원하는 재원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방소멸위기지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방소멸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역경제 침체 및 지방소멸 위기가 있는 지역을 지방소멸위기지역(이하 "소멸위기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1조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멸위기지역을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인구감소율 및 출생율
  - 2. 노령인구비율 및 생산가능인구비율
  - 3. 인구 평균 연령
  - 4. 지역 면적 대비 인구 비율
  - 5. 재정자립도
  - 6. 지역내총생산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멸위기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멸위기지역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소멸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멸위기지역의 정주여 건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5년마 다 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소멸위기지역 지원 목표에 관한 사항
  - 2. 소멸위기지역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 3. 소멸위기지역 주민 생활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 4. 소멸위기지역 산업 활성화, 이주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5. 소멸위기지역의 출산율 제고, 인구 유입 촉진 등에 관한 사항
  - 6.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 관련 법령 정비 검토
  - 7. 소멸위기지역 영유아 보육, 청년 일자리, 교육여건 확충과 이에 관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 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소멸위 기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소멸위기 지역 지원에 대한 계획안(이하 "시·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시·도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계획안을 기초로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11조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확정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때 시·도계획안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⑨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소 멸위기지역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인구, 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확정) ① 시·도지사는 제7조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제11조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위원회) ①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기본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시행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조정에 관한 사항
  - 4. 소멸위기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위원장이 소멸위기지역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인구감소, 지방소멸위기 및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지방소멸위기지역발전기획추진단)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발전기획추진단(이하"발전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발전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지방소멸위기지역발전관리단) ① 발전추진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발전관리단(이하"발전관리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발전관리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이주민지원센터 설치) ① 소멸위기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이주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주민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 2. 이주민 복지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종합적 안내
  - 3. 이주민 고충 상담
  - 4. 그 밖에 시장·군수가 이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업무
  - ③ 이주민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통계자료 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에 필요한 소멸위기지역 관련 통계자료를 매월 조사·작성 및 분석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통계자료를 기본계획안 및 시행계획안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통계자료를 조사·작성 및 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조사·작성 및 분석과 그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사업비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조세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멸위기지역 주민등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멸위기지역 발전 및 개발사업을 지원

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8조(사회간접자본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멸위기지역 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 반시설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멸위기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소멸위기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중교통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등) 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멸위 기지역에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권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 여야 한다.
  - ②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위원회가 신속히 결정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20조(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관리 청의 장 또는 소멸위기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공장과 그 밖의 국·공유재 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멸위기지 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소멸위기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 조제1항·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소멸위기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등의 임대 또는 매각 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외국인 체류에 관한 특례) ① 소멸위기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증의 발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시·도지사의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22조(청년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소멸위기지역에서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직장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 조사 및 제공
  - 2.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취업교육 상담
  - 3.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창업 정보 조사 및 제공
  - 4. 청년 미취업자에 관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 5. 그 밖에 청년 미취업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시·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원센터에는 소멸위기지역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교육·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 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⑤ 국가는 지원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농림·해양·수산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멸위기지역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멸위기지역의 농업·축산업 및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지원할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멸위기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멸위기지역 중 농업생산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는 새로운 작물의 도입, 지역 특산물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24조(노후 주택 개량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멸위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주택의 개선을 위한 신축 및 주택 개수·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5조(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멸위기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 화시설, 관광·숙박·위락·여객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교육·문화·관광 시설"이라 한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멸위기지역에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소멸위기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교육·문화·관광시설을 소멸위기지 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인·허가 등을 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멸위기지역의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 조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멸위기지역 문화예술 진흥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 교육부장관은 소멸위기지역의 개발과 관

련한 교육목적 달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 제27조(교육행정특별위원회 설치) ① 소멸위기 지역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연계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협업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교육행정특별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행정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 제28조(영유아의 보육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영유아 보육지원을 위하여 소멸위기지역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우선 설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멸위기지역의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및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9조(자녀장려세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멸위기지역 주민의 자 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환급할 수 있다.
- 제3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라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회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③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 3. 그 밖의 수입금
-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제14조에 따른 이주민지원센터 설치
- 2. 제16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 3. 제24조에 따른 노후주택 개량 지원
- 4.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